

210.1  
통147

# 가구부문 경상조사 지침서(수정분)



1994

통 계 청



48061

# 목 차

I. 가 구 관 리 .....	3
II. 인 구 동 대 표 본 조 사 .....	21
III.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	39
IV. 도 시 가 계 조 사 .....	61

# I. 가 구 관 리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8	<table border="1" data-bbox="285 329 683 553"> <tr> <td colspan="2"></td> <td>경제활동조사구수</td> </tr> <tr> <td>전</td> <td>국</td> <td>1,091(*)</td> </tr> <tr> <td>시</td> <td>부</td> <td>820</td> </tr> <tr> <td>6대</td> <td>도시</td> <td>520</td> </tr> <tr> <td>군</td> <td>부</td> <td>271</td> </tr> </table>			경제활동조사구수	전	국	1,091(*)	시	부	820	6대	도시	520	군	부	271	<table border="1" data-bbox="744 329 1147 553"> <tr> <td colspan="2"></td> <td>경제활동조사구수</td> </tr> <tr> <td>전</td> <td>국</td> <td>1,091(*)</td> </tr> <tr> <td>시</td> <td>부</td> <td>818</td> </tr> <tr> <td>6대</td> <td>도시</td> <td>520</td> </tr> <tr> <td>군</td> <td>부</td> <td>273</td> </tr> </table>			경제활동조사구수	전	국	1,091(*)	시	부	818	6대	도시	520	군	부	273
		경제활동조사구수																														
전	국	1,091(*)																														
시	부	820																														
6대	도시	520																														
군	부	271																														
		경제활동조사구수																														
전	국	1,091(*)																														
시	부	818																														
6대	도시	520																														
군	부	273																														
p 9 9행	- [현재 231개→개편 271개]	- [현재 231개→개편 273개]																														
p 11 20행	- 도시가계조사 실시 조사구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조사 실시 3개 구역중 1개 구역을 선정하여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한다	- 도시가계조사 실시 조사구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조사 실시 3개구역중 중앙에서 설정한 1개구역을 선정하여 도시가계 조사를 실시한다																														
p 13 11행	- 조사대상 구역 설정당시 적격가구의 ⅔이상이 부적격 가구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 조사대상 구역설정당시 적격가구의 ⅔이상이 부적격가구로 변동되거나 또는 적격가구수가 3가구이하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13 13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노력을 다하여 설득을 하여도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관리과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 제</li> </ul>
p 21 7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li> </ul> <p>이미 부여한 거처번호 및 앞으로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에 새로 부여하는 거처번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조사담당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사구전체(비조사 구역 포함) 변동사항을 매월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단, 비조사구역의 가구변동사항은 대량증감(조사구 전체의 1/2) 없는 경우 년 2회(6,12말일 기준)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li> </ul> <p>o 거처번호</p> <p>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조사담당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는 구역별로 기존번호에 연결하여 반드시 조사구전체(비조사구역 포함) 변동사항을 매월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21 19행	- 삽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조사구별 가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조사구역 : 매월 관리 (현행방법과 동일)</li> <li>o 비조사구역: 가구의 대량 증감(2배 또는 1/2)이 없는 경우는 조관 02440-379 ('93. 11. 20)에 의거 년2회(6, 12월말 기준) 보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수 표시 : 조사구 요도상 거쳐마다 매반기1회 가구수를 연필로 반드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li> <li>- 가구명부 : 매반기 1회 변동사항만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li> </ul> </li> </ul> </li> </ul>
p 32 3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경제활동 가구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란 : 제외가구이면 1, 대상가구이면 2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경제활동 가구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란 : 제외가구이면 1, 대상가구이면 2로 기재하되,</li> </ul> </li> </ul>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32 11행	<p>- 14. 도시가계 가구구분</p> <p>②란 : 대상제출이면 1, 대상 미제출이면 2, 대체제출이면 3, 대체 미제출이면 4, 대상외 가구는 5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①란이 제외가구일 경우 ②, ③란을 blank 또는 ○○으로 처리한다.</p> <p>- 14. 도시가계 가구구분</p> <p>②란 : 대상제출이면 1, 대상 미제출이면 2, 대상구역 부적격이면 3, 대상외 가구는 4로 기입한다.</p>			
p 33 6-10행  6행	<p>- 16. 표본대체 가구현황</p> <p>- 삽 입</p>	<p>- 삭 제</p> <p>- 16. 미제출란</p> <table border="1" data-bbox="772 1179 966 1246">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p>도시가계 가구구분의 2번째 컬럼이 '2' (대상미제출)일 경우에 기입한다.</p>	①	②	③
①	②	③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p 41 5행</p>	<p>-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9' CODE 사용함에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1명인 경우는 '91', 남, 여를 불문하고 2명을 원할때는 '92' 등으로 부호를 기입한다.</p>	<p>① - ②란 : 미회수사유          ③란 : 월평균 추정소득계층 구분</p> <p>1 . . . 50만원미만          2 . . . 50 - 100만원미만          3 . . . 100 - 150만원미만          4 . . . 150 - 200만원미만          5 . . . 200 - 300만원미만          6 . . . 300 - 500만원미만          7 . . . 500만원이상</p> <p>-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9' 번 CODE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1명인 경우 '91', 2명인 '92', 3명이상인 경우는 '99'로 부호를 기입한다.</p>
<p>p 45 11행</p>	<p>- 가구전입의 경우 11란에는</p>	<p>- 11란 가구의 전입 및 누락의</p>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도 ○○○구, 시, 군을 기입하며 12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p>	<p>경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span> <span>○○</span> <span>○○○</span> </div> 이동종류 시·도 구·시·군  코드를 기입하며, 12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하되, 해당코드를 반드시 기입한다.</p>
<p>p 46 7행</p>	<p>- 가구전출의 경우 20란에는 ○○도 ○○○구, 시, 군을 기입한다.</p>	<p>- 20란 가구전출의 경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span> <span>○○</span> <span>○○○</span> </div> 이동종류 시·도 구·시·군  코드를 기입한다.</p>
<p>p 47 2행</p>	<p>- 출생 및 착오가구원은 36란 38란을 사선한다.</p>	<p>- 출생 및 착오가구원은 38란, 39란을 사선한다.</p>
<p>p 69 3행</p>	<p>- ‘3 가구원증가’에서 ‘39 구분’이 출생이나 출생누락일 경우에는 ‘임신기록 및 결과’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p>	<p>- ‘3 가구원증가’에서 ‘40 구분’이 출생이나 출생누락일 경우에는 ‘임신기록 및 결과’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p>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69 14행	- '3 가구원증가' 에서 구분란 (39란)이 출생(출생누락) 이면 '출생조사표' 가 제출 되었는가 확인한다.	- '3 가구원증가' 에서 구분란 (40란)이 출생(출생누락) 이면 '출생조사표' 가 제출되었는가 확인한다.			
p 73 9행 (우)	- 14. 도시가계 가구구분 1. 대상제출 2. 대상미제출 3. 대체제출 4. 대체미제출 5. 대상외	- 14. 도시가계 가구구분 1. 대상제출 2. 대상미제출 3. 대상부적격 4. 대상외			
p 73 16행 (우)	- 삽 입 『16란 도시가계대체가구』 와 『17란 주소』 사이	- 16. 미제출란 <table border="1" data-bbox="783 1139 976 1206">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칼럼수 : 3 ① - ②란 : 미회수사유 ③란 : 추정월 평균소득계층 구분	①	②	③
①	②	③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p 75 14행 (우)	- 학 력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5. 대학이상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5. 대학교 6. 대학원이상
p 79 15행 (우)	- 가족관계 41 혼인, 이혼	- 가족관계 41 혼인 45 이혼
p 81 7행 (우)	- 삽 입	- 13. 변동구분 31 조사구교체로 포함(전입) 33 조사구 추가추출로 포함 (전입) 81 조사구교체로 제외(전출)
p 84 4행 (좌)	- 36 전거주지 37 전입일자 38 이동사유 39 변동구분 40 경찰상태	- 36 전입일자 37 경찰상태 38 전거주지 39 이동사유 40 변동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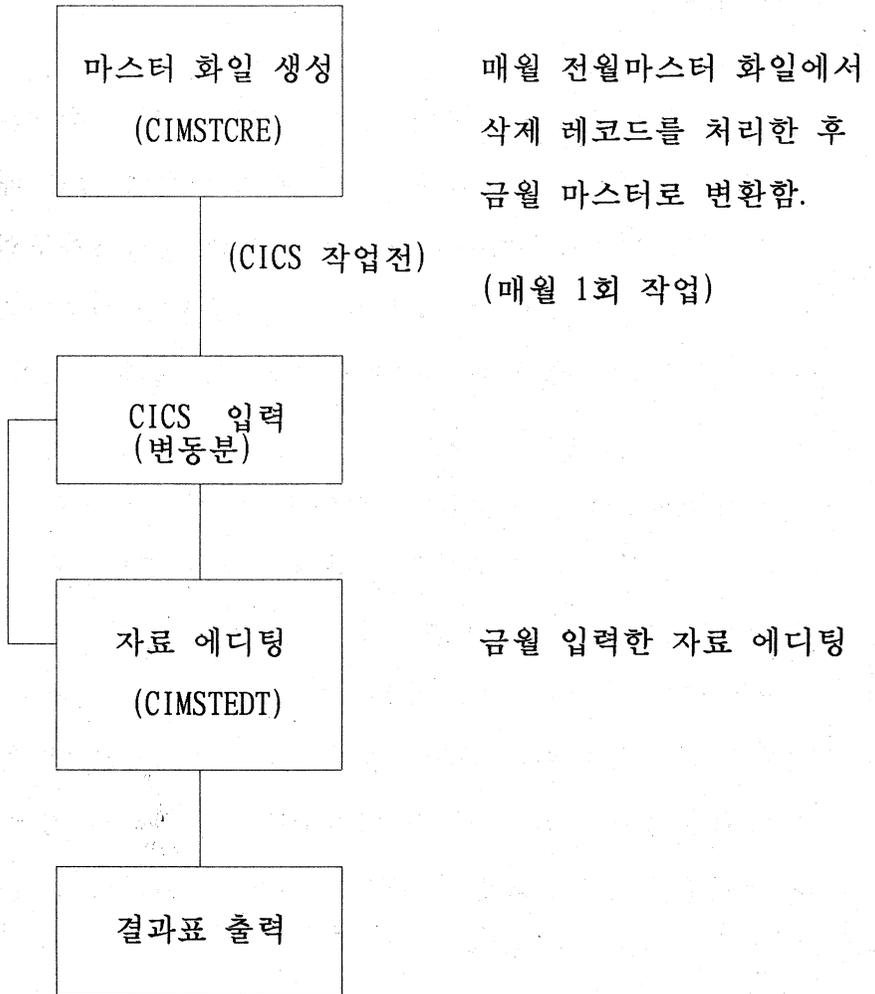
## < 부 록 >

### 1. CICS 작업기능키

- PF1(가구이동); 조사구내 가구의 이동이 있을 때 이용한다.
- PF2(가구원이동); 조사구내 가구원의 이동이 있을 때 이용한다.
- PF3(분가);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동일조사구의 조사구역 내에서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했을때 이용한다.
- PF4(통합); 동일조사구의 조사대상구역 내에서 2가구가 1가구로 통합 될 때 이용한다.
- PF5(가구입력); 신규입력, 화면 Clear시 이용한다.  
신규가구 입력시 사무소코드번호 및 담당자ID를 반드시 입력한다.
- PF6(보관); 신규입력, 임신수정, 기타 자료수정시에 이용한다.
- PF7(전가구); 현재가구의 앞가구를 순차적으로 검색할 때 이용한다.
- PF8(후가구); 현재가구의 뒤가구를 순차적으로 검색할 때 이용한다.
- PF9(후가구원); 화면이 한정된 관계로 가구원이 10명이상일 때 이용한다.
- PF10(임신수정); 임신년월과 결과를 수정할 때 이용한다.
- PF11(오류가구삭제); 잘못 입력한 가구를 삭제할 때 이용한다.
- PF12(가구원삭제); 잘못 입력한 가구원을 삭제할 때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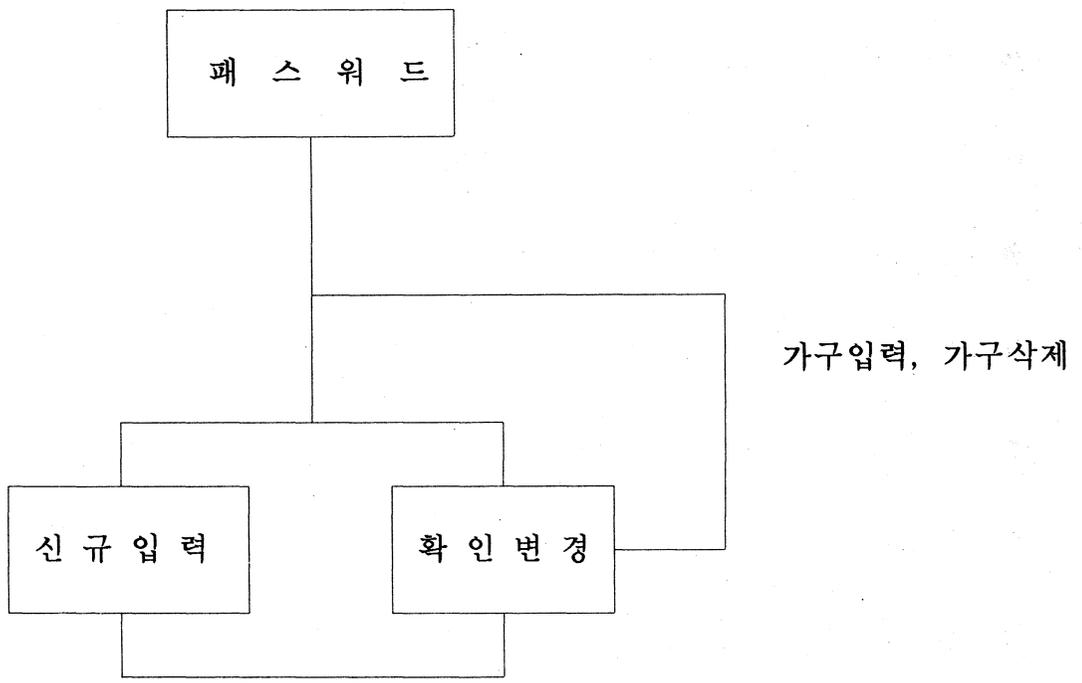
## 2. 전산처리 흐름

### 가. 작업순서



\* 매월 26일 기준으로 CIMSTCRE Program을 SUB(생성)시킴.  
(날짜가 바뀔 경우 따로 연락할 예정)

나. 가구입력



\* 신규입력에서 보관하면 확인변경상태가 된다.

### 3. 프로그램 설명

- CIMSTCRE : 전월마스터에서 삭제레코드 처리후 금월마스터로 변환함.
- CIMSTEDT : 금월마스터 화일 에디팅
- VHMSTPR : 마스터 화일 리스트 출력(전사무소)
- VHMSTPRJ : 마스터 화일 리스트 출력(조사구별)
- VHTABDE : 도시가계 대체가구 출력
- VHTABD01 : 도시가계 총괄표
- VHTABD02 : 도시가계 가구구분 변동내역
- VHTABGA1 : 가구관리 총괄표 (경제활동사항)
- VHTABGA2 : 가구관리 총괄표 (도시가계사항)
- VHTABEA : 경제활동 인구조사 총괄표
- VHTABIN1 : 인구동태표본조사 총괄표

4. 오류 코드

[ 가구표: 가구에 관한 사항 ]

COL	ERROR	발 생 이 유
2- 4 5- 7 8- 9	*** *** ***	현 년월이 아닌 경우 담당조사구의 USER-ID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조사구의 사무소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16 17-18 19-20 21-22  23-24 25-26	***** ** ** ** JU GAGU MISSING ** HH CARD MISSING POP CARD MISSING POP-00 CARD MISSING	『표본조사구』가 아닌 경우 『구역번호』가 01 - 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거처번호』가 01 - 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번호』가 01 - 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주가구가 누락된 경우  『가구번호』가 01 - 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카드』가 누락된 경우  『가구원카드』가 누락된 경우  가구주가 누락된 경우
27	*	『거처구분』 = 1 - 5이외의 범위일 경우 동일거처 내에서 주가구 거처구분과 다른 경우
28	* A	『소유구분』 = 1 - 7이외의 범위일 경우 『소유구분』 = '1' 이면서 『가구번호1』이 '01' 이 아닌 경우
29-30    31	** B1 B2 B3 *	주인가구가 아니면서 ' ' 가 아닌 경우 『가구번호1』이 '01' 이면서 『총방수』가 01-2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거처구분』이 '2', '3', '4' 이면서 『총방수』가 8개 이상 나올 경우 『소유구분』이 '1' 이면서 『총방수』가 01-2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총방수』가 동일거처 내의 각 가구들의 『사용방수』의 합보다 작을 경우 『사용방수』 = 1 - 9이외의 범위인 경우

COL	ERROR	발 생 이 유
32	* HOUSE CODE ERROR C	『난방시설』 = 1- 6이외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소유구분』 ①자가 CHECK  『저처구분』과 『난방시설』과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33 34-38 39 40 41 42 43	* * * * * * *	『취사연료』 = 1-5이외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허용범위 ' ', '1-5' 이외 기입된 경우 『주된생활비』 = 1-6이외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사구분』 = '1', '2'가 아닌 경우 『가구구분1』 = '1', '2'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구분1』 = '1', '2'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구분1』 = '1'이고 기입된 경우 『가구구분1』 = '2'이고 『가구구분3』 = 1-3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44 45	* *	『가구구분1』 = 1-5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사구분』 = 1이고 1-5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사구분』 = '2'이고 기입된 경우
46-47	D1  D2	『도시가계 가구구분1』 = '5' 이고 『부적격사유』 = 01-09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도시가계 가구구분1』 = '5'가 아니면서 『부적격사유』가 기입된 경우 『부적격사유』 = '03' 이고, 가구원수가 1인이상 일 경우
48-55 48-49 50-51 52-53 54-55	***** ** ** ** **	『가구구분2』 = '3' 이고 미기입되는 경우 『가구구분2』 = '4' 이 아니고 기입되는 경우 『구역번호』가 01-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저처번호』가 01-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번호』가 01-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번호』가 01-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56-95	HANGUL ERROR !	『주소』란의 한글 오류

[ 가구표: 가구원에 관한 사항 ]

COL	ERROR	발 생 이 유
27-46	HANGUL ERROR !	『성명』란의 한글 오류
47-48	** E1 E2 E3	『가구주관계』코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구주관계』='01'과 『가구주관계』='02'가 동일한 성별인 경우 『가구주관계』='01' (가구주)의 중복, 누락 『가구주관계』='02'이고 『배우관계』='2'가 아닌 경우 『가구주관계』='03', '04'이고 『배우관계』='1'이 아닌 경우 『가구주관계』='05', '06'이고 『배우관계』='1'인 경우
49-50	F1 F2	『모의행번호』='00'일 경우 만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모의행번호』에 해당되는 행번호가 없는 경우
51	*	허용범위(1,2)를 벗어난 경우
52-58 55-56 57-58	***** G1 G2	『생년』= 880 - 조사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생월』=1-12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월』과 『일』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59-61 59 60	*** H H	『만나이』< 5 이면서 『학력』이 기입된 경우 『만나이』> 4 이면서 『학력』이 미기입된 경우 『학력1』과 『학력3』 만나리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학력1』과 『학력2』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62	*	『만나이』 < 15이면서 『배우관계』를 기입 『만나이』 >=15이면서 『배우관계』를 미기입 또는 오류기입 『배우관계』=1-4, ' '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모가 같은 가구에 없을 경우

COL	ERROR	발 생 이 유
63-66	HH JJJJ ****	학적 CHECK ERROR 배우관계가 '1' 이면서 임신 여부가 있을때 『초혼년월』 > 조사년월, 『초혼년월』 < 생년월 일 경우
67-68	** I1	『이상자녀』 = 00-99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배우관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성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만나이』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69-72	**** JJJ1 JJJ2	『임신년월』 = 현년월 - 1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배우관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성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71-72 73	** *	임신월 = 01-12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배우관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성별』 = '1' 이면서 기입된 경우 『총출생자녀수』 = 0-9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74-79	****	『921001』 보다 작거나 『조사년월일』 보다 큰 경우
76-77	**	『전입월』 = 01-12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월』 과 『일』 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80-81	**	『정활상태』 = '11' 이고 『만나이』 가 15세 이상 『정활상태』 = '12', '21', '22', '23' 이고 『만나이』 가 15세 미만 『정활상태』 = '12', '12', '21', '22', '23' 의 범위 를 벗어난 경우

## Ⅱ . 인 구 동 태 표 본 조 사

지침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6 - 5줄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편의상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음)</li> </ul>
p7 - 2줄	(시부820, 군부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부818, 군부 273)</li> </ul>
p34 - 15~16줄	삽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혼 상태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가 생길 경우는 미혼으로 처리한다.</li> </ul>
p51	삽 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동태 직업부호</li> <li>2. 항목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안</li> </ol>
p53	삭 제	뒷 페이지에 있음
p65	삽 입	인구동태 표본조사표

# 부 록

1. 인구동태 직업부호
2. 항목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안

# 1. 인구동태 직업부호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1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1 2 법인관리자	1 3	종합관리자
전문가 2 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 3 교육 전문가	2 2 2 4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기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1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3 3 교육 준전문가	3 2 3 4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기타 준전문가
사무직원 4 1 일반 사무직원	4 2	고객봉사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5 1 개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 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 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 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 2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3 정밀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 1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8 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 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9 1 행사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 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9 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0 0		무직, 학생, 미상

## 2. 항목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안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허위로 응답함</li> <li>· 의도적으로 가명으로 작성하는 경우(직업여성...)</li> <li>· 조사에 응하기 귀찮아서 허위로 응답함</li> <li>· 전화로 조사할 경우 발음상의 문제(○, ㄱ...)</li> <li>· 호적상과 실제이름이 틀리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표를 작성해서 보여주며 정확히 기재되었나 확인시킴</li> <li>- 자계식으로 작성하게 함</li> <li>- 이름이 서너 개 있을 경우 호적이름으로 작성함</li> <li>- 미흡할 경우 재차 방문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냄</li> </ul>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딸을 아들이라고 거짓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와의 관계나 이름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름만으로 성별구분은 불가능함</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생년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답변하므로 착오발생</li>   <li>• 본인과 기타 가구원과의 답변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와의 관계나 이름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질문시 주민등록 생일과 실제 생일을 동시에 물어서 판단함</li>   <li>- 양·음력 환산표를 지참하여 윤달여부를 확인함</li>   <li>-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지 않을 시 실제 태어난 날을 재확인함</li>   <li>- 조사된 가구라도 가구원마다 만나는 대로 재차 본인에 관한 조사를 하여 확인함</li> </ul>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자존심으로 인한 학력 허위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심 문제로 정확한 응답을 기피할때는 낮은 학력의 성공</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가 있을 때 거짓답변</li>   <li>· 저학력일수록 학력을 거짓으로 답변함</li>   <li>· 고학력일 때 현재의 형편 때문에 낮춰서 응답함</li> </ul>	<p>사례나, 능력 및 실력위주의 사회임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답변으로 이끌어 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사람이 방문하여 동석하고 있을 경우 조사했을 때는 거짓답변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조용한 시간에 재차 방문함</li>   <li>- 저학력일수록 요즘 세대에 맞추어 답변을 하므로 연간조사 시나 가구표를 배부하여 본인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답변의 착오를 줄일 수 있음</li>   <li>- 학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여 현재의 위치가 비참해졌을 때, 그 수준에 맞춰서 거짓답변을 했을 경우</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연령의 경우에 소학교 중퇴, 졸업이 불분명할 때</li>   <li>· 가구주의 저학력과 처의 고학력인 부부간의 학력차가 심할 경우</li> </ul>	<p>에는, 학력과 어울리지 않는 대화나 행동을 파악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본인의 응답보다 가족의 답변이 정확하므로 주의깊게 관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가족에게 문의했을 때는 소학교 중퇴 및 졸업이 불분명하므로 본인의 응답을 받아내도록 하며, 야학이나 서당, 학당에서의 수업은 학력에서 제외</li>   <li>- 통상적으로 처보다 가구주가 고학력이거나 동등한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비해 가구주 학력이 처보다 낮을 경우 예를들면 가구주가 중졸, 처가 대학원 재학인 경우 조사 당시 많은</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p>어려움이 있으나 상황판단을 신속히 해서 가구주보다는 처에게 답변을 얻어냄</p>
배우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를 숨기는 경우(떴떳하지 못해서, 부모의 반대, 몰래 살기 때문 등)</li> <li>· 재혼일 경우(인근 가구에 대한 창피감 자존심 때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관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위기일 때는 성급히 질문하여 불응가구가 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함 예) “언제부터 만나서 살게 됐느냐” 는 식으로 대화중 질문방법을 유도하여 조사</li> <li>- 부부간의 나이 차이와 처와 자녀의 나이 차이가 심할 경우 초혼년월을 가구주와 처를 각각 면담하여 몇살에 했는가를 부부에게 각각 묻는다.</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초혼년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생활 노출기피로 이혼을 미혼으로 숨김</li> <li>· 처음 응답으로(번복하기 싫어서) 계속 밀고 나감</li> <li>· 사실혼(동거년월)과 법률혼의 날짜(년월일) 착각</li> <li>· 동거를 수치로 생각하고 숨기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든 여자가 혼자사는 경우 주변가구와의 단절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심을 갖고 계속 친절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목적달성을 함</li> <li>- 재조사하는 입장에서 처음과 답변이 다를 경우에도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임</li> <li>- 결혼식날짜와 동거날짜를 질문하여 파악함(법적인 것보다 실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임을 주지시킨다)</li> <li>- “형식보다 형편에 따라 같이 사는 것도 경제적이다” 라고 동조하며, 편안한 상태에서 답변을 얻어냄</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억력 감퇴로 인한 착오</li> <li>· 재혼을 초혼으로 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을 구체적으로 묻고, 첫 아이를 결혼후 얼마만에 또는 몇살에 출산했는가를 질문하여 역산해서 계산함</li> <li>- 자녀 중에서 맏이와의 나이차이에서 재혼이 확인되면, 각각 다른시점에서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결혼날짜 및 함께 생활한 동거일을 회상시킴</li> </ul>
이상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처)이 출산한 자녀수를 말함</li> <li>· 생각해 본 적이 없음</li> <li>· 본인(처)의 생각보다는 남편이나 집안의 형편을 염두에 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한 자녀수와는 관계없이 바람직한 희망 자녀수를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li> <li>-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다음 방문시 확인하도록 함</li> <li>- 본인의 의사를 원칙으로 하며 생각이 바뀔 경우 수정 변동해주도록 함</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임신년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일과 동거일이 다를 경우 동거시 임신을 부끄러워하는 경우</li> <li>· 임신은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도 못하고 아기를 낳게될 경우 부모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동거하기로 한 가정</li> <li>· 매우 기대한 자녀로 어렵게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초기에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라는 형식의 틀이 중요치 않다고 설득하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많다고 설득함으로써 혼전에 임신한 것을 발견하게 됨</li> <li>- 인간적인 대화나 설득함으로써 발견함</li> <li>-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주부의 변화된 몸가짐을 예리하게 관찰함</li> </ul>
총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사망일 경우 총출생아 수 누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사망일 경우나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충격때문에 아</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었을 때 출산자녀수에서 제외하고 답변</li>   <li>· 해외거주 및 이민의 경우 국내거주 자녀수만 응답</li>   <li>· 재혼가구에서 전처소생의 자녀수를 본인 출산자녀수</li> </ul>	<p>에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출생자녀수에 포함하지 않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숙해진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유산의 경우와 구별 짓기 위해 태어난 아기수임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거주나 이민의 경우에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아주 떠나버렸다는 생각에서 출생자녀수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으므로 출산한 자녀수, 잃어버렸거나, 떠나버렸거나 태어난 자녀수임을 강조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li>   <li>- 재혼가구의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li> </ul>

항목별	문 제 점	대 책
	<p>에 포함시켜 답변</p> <p>· 양자를 준 경우는 빼고, 양자를 들인 경우 출산자녀에 포함 답변</p>	<p>구별짓기 싫은 마음에서 본인 출생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판단을 신속히 해서 결혼년도와 자녀출생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재혼한 가구의 불응은 항상 존재하므로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항목조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문의해야 함</p> <p>- 양자를 준 경우는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생자녀수에서 빼거나 양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의 출생자녀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출생자녀수 조사 의미를 성실히 설명해서 착오가 없도록 재차 문의함</p>

### Ⅲ .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15쪽 1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주간 중에 표본구역내에 거주하던 가구가 실사기간 중에 전출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전출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를 나갔을 때 이미 전출하고 없어 사실상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사기간중 표본구역내에 전입한 가구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주간 중에 표본구역내에 거주하던 가구가 실사기간 중에 전출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전출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미 전출하고 없을 경우에는 실사기간 중 표본구역내에 전입한 가구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li> </ul>
22쪽 1행	<p>1 ~ 2행 삭제 (다음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있던 가구가 전출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구가 전입하여 온 경우에는 전입번호만 02 또는 교체수만큼 부여한다.</li> </ul>	<p>예) 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첫번째 가구는 처음과 똑같이 변동이 없는 경우 → 0101</p> <p>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두번째 가구가 세번 이사하고 네번째 이사온 가구일 경우 → 0204</p>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32쪽 2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한다.</li> </ul>
37쪽 6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령층에 따라 추가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령계층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할 수 있다.</li> </ul>
40쪽 아래서 2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직장의 정의와 자기 사업상의 정의는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직장의 정의와 자기 사업장의 정의는 ~</li> </ul>
45쪽 6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얻기 위하여 장학금을 받고 현재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현재 직업을 수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직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위를 받을 때까지 현재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일시휴직</li> </ul>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65쪽 12행	<p>하는 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을 떠난 직후 즉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이직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므로 구직기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이직할 때를 묻든지 또는 전직이 없는 경우 학교졸업 또는 제대시기를 묻고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한 시기와의 간격을 물어 판단할 수 있다.</li> </ul>	<p>으로 처리하지 말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기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이직할 때를 묻든지 또는 학교졸업 혹은 제대시기를 묻고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한 시기와의 간격을 물어 판단한다.</li> </ul>
95쪽 16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사람 이상이 동업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업자로 자영자 또는 고용주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어느 하나에 분류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사람이상이 동업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인은 고용주로 나머지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한다.</li> </ul>

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108쪽 10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기일 및 자료처리일정</li> <li>(1) 조사원이 책임자에게 실사주간 마지막 날로부터 5일이내</li> <li>(2) 소장은 조사표를 검토한 후 매익월 8일까지 본부에 제출</li> <li>(3) 천공기일 : 매월 8일 ~ 12일</li> <li>(4) 내검 : 매월 13일 ~ 19</li> <li>(5) 제표 : 매월 20일 ~ 22</li> <li>*지방사무소 온라인 입력방식이 결정될 경우에는 자료처리일정은 변경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에 맞도록 일정수정</li> <li>(1) 조사표 내검 및 온라인 자료 입력 : 익월 10일까지</li> <li>(2) 조사표 제출 (조사관리과) : 익월 12일까지</li> <li>(3) 본부기계내검(전산개발과) : 익월 14일까지</li> <li>(4) 결과표 제표 : 익월 15일까지</li> </ul>

\* 틀리기 쉬운 직업분류는 신직업분류로 수정함.

### < 틀리기 쉬운 산업분류 >

사 업 체	산업 분류	사 업 체	산업 분류
돌아다니면서 수도, 보일러 수리	45	동양페인트 공업사	24
카 바 레	55	코닥칼라 사진대리점(소매)	52
목공소 문작제조	20	사진현상서비스	74
농촌지도소	75	대양고무(주)(신발제조)	19
문화재연구소(신안유물분석)	73	오양냉동(해산물가공)	15
문화재보존	92	생명보험(주)	66
산업용 무기화합물 또는 산업용 가스제조	24	동아콘크리트(전주제조)	26
도시가스 등 배관조직을 통 하여 공급하는 연료가스	40	동원산업(종이포장지제조)	21
오산제지공업(주)(종이제조)	21	공무원교육원	80
포 장 마 차	55	관광회사(여권수속)	63
신문보급소 신문보급	52	유창금속(조립금속)	28
동구수도사업소	41	프라스틱공장(프라스틱제조)	25
알미늄그릇제조회사	28	녹음공테이프제조	24
요 식 업	55	녹음복제테이프	22
연탄소매소	52	반도의료기기상사(의료기기 제조)	33
전기가설공사	45	타자기판매점(소매)	52
수원여객(주)	60	국립생사시험 검사소	74
한국가스안전공사	74	컴퓨터학원	80
		일신제강(파이프제조)	27

사 업 체	산업 분류	사 업 체	산업 분류
무등양말공장	17	해운항만청(선박통제)	75
남의밭 농사일	01	우리집 하숙	55
자기집에서 기념품제조(제주 돌제품, 모조장식품)	36	대성국민학교	80
한국전기통신공사	64	삼성펄프	21
소 방 서	75	새마을금고	65
주 택 공 사	70	한국금형	29
절(사찰)	91	한국 남산업(X-MAS전구생산)	31
토지개발공사	70	조선맥주	15
우리집 피아노교습	80	군부대 군행정업무	75
개간사업장	45	호 텔	55
술 집	55	흑염소보신원	15
화장품대리점	52	자기집생뱀탕	55
구슬공장	26	우진제관(깁통제조업)	28
고려페인트(제조외의 경우)	24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실	70
현대자동차 제조공장	34	기독교병원 의료업	85
진흥상사(소매업)	52	빵 집	52
화학섬유 방적사제조	17	화물취급소	63
화학섬유 방사제조	24	식 당	55
극 장	92	한일냉장(냉장보관)	63
일일공부보급소	52	한국칼라 필름생산	24

사 업 체	산업 분류	사 업 체	산업 분류
양계협회	91	축산업협동조합	91
경남보건소 국민보건연수원	85	건설샷시문 제조	28
자동차부속 제조	34	중기임대업(장비만 임대)	71
삼정통상피혁수출(제조하여 수출할 경우)	19	중기용역업(운전자 포함)	45
동진상운	60	간판만드는일	36
한일은행	65	우편물 배달	64
고물장사	51	상업광고 도안 하청	74
한국전력	40	집에서 잤까는 일(자기가 생 산하여 까는 일은 01)	15
의료보험조합	66	물걸음통 제조	36
전매공사(담배제조)	16	표 구 사	36
삼환기업(건설업)	45	이온 정수기 제조공장	29
경양식집	55	의료보험공단	66
세멘트제조	26	조화만듬	36
지하철본부	60	동해가스	40
콩나물공장	01	성북구 보건소	75
서울시청	75	건축공사 미장, 벽돌쌓기	45
도로포장공사	45	수도펌프 배관고침	45
개인화실	92	대우 운동화 제조업체(봉제 신발)	19
조경설계	01	조면활동	01

< 틀리기 쉬운 직업분류(신직업분류) >

말 은 일 의 종 류	직업 분류	말 은 일 의 종 류	직업 분류
미 식 공	82	과출소 소장	13
수질검사	31	동읍면장	13
수납사무사무원	42	소방서 서장	13
시멘트배합공	82	절에서 밥해줌	91
포장지만듬	81	측량기사(토지개발공사근무)	21
호떡판매(만들어 판매)	74	보일러설비 보일러공	71
채소판매(자영, 고용주인경우)	52	직업소개소 운영자	34
통근버스 운전자	83	술집 술판매(웨이터, 바텐더)	51
세무공무원(과세업무담당 직원)	34	자개만듬	74
타자기 고침	72	구슬공장 구슬만듬	73
컴퓨터학원 강사	33	현대자동차 전무	12
철도청 행정사무	41	현대중공업 잡노동	93
철도청 기관사 차장	83	극장 대표원	42
승차권발행	42	치안본부 경리계장	42
우리집 하숙	51	정보부 정보원	34
양말공장 포장공	93	울산석유 작업반 관리계장	41
포장기 조작원	82	울산석유 계량기 검침	92
경운기로 화물운반(일용)	83	울산석유 전기점검 관리계장	72
대서소 대서일	41	울산석유 안전검사	31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종이 제조기계 고침	72	군 면세품 관리하는 일	41
자동차부속제조 선반공(자동)	82	호텔예약 홍보영업계	52
동진상운 선장	31	염소가공 식품가공 (화합물 처리가공 포함)	82
한일은행 서무계	41	뱀탕 만듬(조리자영)	51
고물장사 행상	91	APT 경비 수위	91
기계부품 제조(조정원)	72	차 조 수	83
증권업무 직원	34	신문보급소 총무	52
경양식집 종업원	51	기독병원 구내식당 종업원	91
세멘트 제조업 막노동	93	빵집 손님접대(가족)	51
술집 접대부	51	화물운송 및 보관(화물운송 및 취급)	93
콩나물공장 콩나물도매(자영 고용주인 경우)	61	식당 음식판매(가족)	51
주물공장 공원	72	한일냉장 냉동기계기능사	81
주조기 조작원	81	농촌지도소 소장	13
양계협회 서무직원	41	찜방판매 종업원	51
대성국교 서무직원	41	중국음식판매 접대(가족)	51
삼성펄프 압연기 조작공	81	설악산 관리사무소 안내원	51
우리집 피아노 교습	33	후지칼라 필름 판매원	52
새마을금고예금출납결재상무	34	창성(요지업)기업 기계실 근무	82

맡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맡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현대공사 간판 기술자	73	호텔카운터 계산	42
분식집 손님접대(가족종사자 점원)	51	동서산업(종이상자)기계 정 비	82
식당음식 만듦(가족종사자)	51	건설공사 보일러공	71
수저 칠보 입히기	73	사립중 사무과장	34
당구장 경영주	51	벽돌공장 벽돌공	82
선로보수 및 관리반장	93	실내도배 도배지바름(일용)	71
사진촬영	31	주리아화장품 외판원	91
포장마차 주류판매(자영, 고용주)	91	안동시청 청소부	91
기계부품 조작	82	호남전당포 주인	42
알루미늄그릇 만듦	82	담배가게 경영	52
(자영)연탄판매	52	쉐타공장	74
반점경영(요식업)	51	세차장 세차공	91
전업사운영	72	채소판매 행상	91
분장사	51	유진운수 노조지부장 (노조업무만 주로하는 경우)	31
수원여객 안내양	51	보일러 설치문 수리	71
동양페인트 생산관리부장	12	법원 집달리 사무실	34
한국중공업 경리계장	42	건영화물 상, 하차	91
밥상 칠하기	73	과출소 사환	51
남해화학 보안계장	51	곶감손질	74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구두수선	74	프라스틱 가정용 신발제조 사출담당	82
국민은행 지점장	13	박스제조주인	82
대우전산처리 키펀치	41	리사무소 이장	41
취로사업 땅파는 일	93	신촌운수 조합장	13
인천제철 쇠절단공	72	시계고침	72
다방 카운터 봄	42	원고교정	41
여관경영	51	신광자동차 보험대리점	34
토목공사 기술사	21	석재조각(석재가공기조작원)	82
주차장 주인	91	동사무소 민원업무	34
삼화고무 인쇄(영세기업)	73	포장인쇄 기계봄	82
박스포장 및 운반	93	인조치아제조	73
해양 전자장비 금형공	82	농업용기계운전	83
쓰레기수거(남의집)	91	가정부	51
양복점주인	74	도금	82
숙주나물 생산	61	가구목공	74
야채하차 하역업	91	건설 및 선박목공	71
철강판매원	52	보험외무사원	91
가방만듬	82	병세척기 조작원	82
여행안내	51	페인트공	71
에어로빅강사	34	체육사범	34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말은 일의 종류	직업 분류
보험회사 영업소장	34	자수원	74
예비군 중대장	51	전당포	42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내	42	전도사	34
용접	72	면단위 농협 조합장	13
집배원	41	임상병리사	31
아기돌봄(유모)	51	점술가	51
염색기계조작공	82	중고차 매매알선	34
장의사	51	인쇄활자 교정	73
금속인형 제조	72	시멘트 배합원	71
발전기 모터수리	72	배합장치 조작용	82
실내장식(인테리어)	71	화장품 미용 외무사원	51
실내장식 디자이너	34	제지기 조작공	81
사진현상	73	골프장 캐디	91
영화 영사공	31	전업사 운영	72
자판기 수급원	91	호텔 예약 홍보영업	52
제분공	73	도정공	82
주유소 주입공	52	봉제인형 제조	74
점토벽돌 성형공	73	부동산업	34
모자제조공	82	구두담기	91
과출부	91	홍신소	34

## <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산업 및 직업 >

### (1) 운전자

대부분의 조사원이 운전사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 대부분 산업 60 ~ 63 운수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산업은 반드시 그 사업체의 기능에 따라야 한다.

### (2) 건설청부업자

건물 특히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사원이 이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음.

#### \* 건축유형

(가) 집주인이 자금을 대고 자기가 살집을 청부업자에게 도움을 주어 짓는 경우

- 집주인의 직업, 산업은 없음 -
- 청부업자는 산업 45, 직업은 하는 일에 따라 분류 -

(나) 집주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지어 파는 경우

- 집주인이 건축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
  - 산업은 45로 분류하고, 직업은 하는 일에 따라 분류
- 집주인이 건축청부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 -
  - 산업은 70 부동산업으로, 직업은 34로 분류

(다) 주택 건축 공사장의 벽돌운반공의 분류

- 청부업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
  - 산업은 45, 직업은 93으로 분류

(3) 농협, 수협 등의 산업분류

농협, 수협 등은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다소 난이한 점이 있으나, 중앙회본부 또는 도지회가 복합적으로 한 곳에 있을 때는 91(회원단체)에 분류하지만 각 부서가 분리되었을 때는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단, 중앙회지소나 예금취급소는 65(금융업)에 분류하고 단위조합이나 농산물, 수산물 공판장은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 이장, 통장의 산업과 직업

이장, 통장은 본래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생업에 따라 분류하나 별도의 생업이 없이 이장, 통장만 할 경우에는 산업은 75(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업은 41로 분류한다.

(5) 일일공부 보급소 주인의 직업

○ 인쇄업체에서 직영하는 경우

산업 22 (정기간행물 출판업)

직업 34 (사업 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 독립운영하는 경우

산업 52 (일일소매업)

직업 52 (도소매자영자)

(6) 신문보급소 주인의 경우

- 신문사 직영의 경우

산업 22 (신문발행업)

직업 34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 중개인)

- 독립운영하는 경우

산업 52 (일반소매업)

직업 52 (도소매자영자)

(7) 사환, 급사, 청소원의 직업

- 사무실에서 문서를 전달하며 심부름하는 경우

91 (단순 서비스근로자)

- 청소를 주로하는 경우 : 91

건물청소원	}
창문청소원	
글쑈청소원	
열차청소원	
도로청소원	
공원청소원	
쓰레기청소원	—

- 여관, 회관 등에서 심부름하는 경우

91(단순 서비스근로자)

- 상점, 기타 사업체에서 배달하는 경우

52(판매원)

(8) 안내에 종사하는 자의 직업

등산안내인	51
산악안내인	
안내인	
수렵안내인	
관광명소안내인	
여행안내인	
공장안내인	
연회장, 경기장, 극장좌석안내인	
항공기, 객실안내인	
엘리베이터운전원	
버스안내원	42
여객열차차장	
사업체접대원	
호텔접수원	
호텔예약원	
병원안내원	
여행사안내원	
백화점안내원	
공항여행사안내원	

(9) 포장공의 직업

출하용 또는 보관용으로 각종 제품을 종이 또는 각종 용기에 손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o 기계포장 82
- o 수동포장 93

## 〈 자영업주의 직업분류 〉

### 가. 자영업주의 직업분류

자 영 직 종	분류번호	자 영 직 종	분류번호
도·소매업 자영자	52	음식, 숙박업 자영자	51
농업경영자	61	임업경영자	61
어업경영자	61		
※ 기타 자영업주(고용원 있는 경우)	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관련 활동을 하고	
병원(의사)	22	법률사무소(변호사)	24
건축사무소(건축기사)	21	사법대서소(사법서사)	24
행정대서소(행정서사)	41	통관사사무소(관세사)	24
회계사사무소(회계사)	24	측량사사무소(측량사)	21
제도사사무소(제도사)	21	실내장식(디자이너)	34
치과의원(치과의사)	22	한의원(한의사)	22
가축병원(수의사)	22	사진관(사진사)	31
세탁소(세탁공)	91	복덕방(부동산업자)	34
이용원(이발사)	51	미장원(미용사)	51
장 의사(장 의사)	51	철공소(선반공)	72
시계수리점(수리공)	73	자동차정비소(3급)	72
자동차타이어수리점	72	(정비공)	
(정비공)		자전차수리점(자전거	72
일반기계수리점(정비공)	72	수리공)	
		전기기기제조사업체	72
		(전공)	
라디오, TV수리점(수리공)	72	전업사(전공)	72

자 영 직 종	분류번호	자 영 직 종	분류번호
상수도사업소(배관공)	71	페인트상(도장공)	71
간판집(도장공)	73	제분소(제분공)	73
인쇄소(인쇄공)	82	목공소(건설목공)	71
개인택시(운전사)	83	목공소(가구목공)	74
귀금속세공소(세공공)	73	제재소(제재공)	74
목각기제조소	74	석 수(석제품조각가)	82
두부공장	74	기름집	82
양복점	74	모자공장	82
양장점	74	자수점	82
편물점	74	양화점	82
구두수선점	74	염색집(나염)	73
대장원	72	전당포	42
홍신소	34	복사 및 청사진점 명 함집	41
유기장 경영자 기원 당구장 탁구장 보울링장 미니골프장 미니사격장 유원지운영 풀장(레크레이션용) 보트장(레크레이션용) 전자오락장 투구장 오락장비 만화가게	51		

나. 경기장의 개인 경영자의 직업분류

체육관      골프장

정구장      기 타

수영장

- \* 경기인(운동가, 코치 등)이 선수양성활동을 직접하면서 경영하는 경우 34 기타 준전문가에 분류하고, 단순히 시설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3 종합관리자에 분류

다. 위생접객업소의 개인 경영자의 분류

공중목욕탕      미장원

이발소      세탁소

- \* 1. 서비스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영자 → 기능별로 분류

공중목욕탕주인 → 51 욕실종사자

이발소주인 → 51 이발사

미장원주인 → 51 미용사

세탁소주인 → 91 세탁공

라. 가내공업

보세품가공      자 수

샴바느질      봉투붙이기

- \* 관련업 종사자와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

## IV. 도시가계조사

## 도시가계조사 사례 및 해설

### 1.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가. 조사대상 : 도시에 거주하는 2인이상 비농가로서 정상적인 가계  
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나. 제외가구(부적격가구)

---

1) 농가 : 다음의 영농규모 이상 경작하는 가구는 제외

- 논·밭의 총면적이 300평이상
  - 소·말 1마리, 돼지·양 3마리, 토끼 40마리, 닭·오리 30수,  
양봉 5통이상 사육하는 가구
  - 누에알 12g이상을 치는 가구
  - 고등원에 및 특용작물 100평이상, 과수·묘목 200평이상을 경  
작하는 가구
  - 단, 복합영농규모가 위에 열기한 규모이하라도 농업조수입이  
농가평균 소득수준 이상이라면 농가로 취급
- 

(사례 1)

- 농가 정의가 애매한 경우인데, 전답을 경작하지 않고 마당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있으며, 개를 사육하는데 큰개 7마리가 있고 이 개  
들이 새끼강아지를 한꺼번에 낳을 경우는 20마리 정도가 되어 개

가 크면 팔고, 또 7마리 정도만 남겨두고 팔고 키우기가 반복되고 있다. 가구주는 직장에 다니며 개는 어머니가 키우고 있음

- 개 사육목적이 애완용이거나 집을 지키기 위해 1~2마리 기르는 경우라면 농가로 보지 않음. 그러나 이 경우는 사업목적의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적격가구로 처리

(사례 2)

- 개를 10마리 사육하고 있는 가구인데, 가구주가 회사에 다니면서 고정수입이 있을 때 봉급자가구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없는가?

- 가구주나 가구원중에 누구라도 농가 정의에 부합하는 규모의 전답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는 가구주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농가에 해당되므로 부적격가구로 처리

(사례 3)

- 가구주는 대학교수이고, 처는 양장점을 하고 있는데 전문대졸인 삼남이 양장점일도 도우면서 시골에 있는 과수원(약 1,000평)을 직접 가정부와 같이 경작하고 있음

- 가구주는 봉급자이나 가족이 농사일을 하고 있으므로 농가로 보아 부적격 처리

(사례 4)

- 가구주는 국민학교 교사이고, 처는 화훼를 300평 재배하는데 1년

에 8개월 정도 파종관리에서 꽃 출하때까지는 취업하지만 4개월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밭 정리를 하고 거의 집에서 가사일을 할때 농사하지 않은 4개월이란 기간을 적격으로 변동해야 하는지?

○ 농가로 보아 부적격 처리

---

2) 어가 : 해면(海面)이나 내수면(內水面)에서 어선 또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양식, 채취, 포획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

---

(사례 1)

- 부부가 남의 배를 타고 한 사람은 고기잡이를 하고 한 사람은 잡은 고기를 손질할 경우? (이들 부부는 한달에 3~4번 정도 집에 들어옴)

○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어업근로자로 적격가구이나 한달에 3~4번 정도 집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서 부적격으로 처리

(사례 2)

- 자기 그물과 낚시로 남의 배에서 어획기에만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가구주로 잡는 양에 따라 배삯을 주고 있음(7:3) 적격가구로 보는지?

-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가로 보아 부적격 처리

(사례 3)

- 가구주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합작투자하여 선박을 구입하고 선원을 고용하여 바다에 나가 계를 채취하여 현장에서 가공업자에게 매매하고 있으며 가구주는 선박과 선원만 관리하는 경우?

- 선박과 선원을 고용하여 수산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경영자로 분류하여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됨

---

### 3) 단독가구 : 1인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사례 1)

- 단독(1인)가구가 조사월에 가정부를 고용하여 침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 조사여부?

- 가사사용인이 침식을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가구는 본래 제외가구였다가 가정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2인가구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부적격가구로 본다.

(사례 2)

- 가구주와 가구원(처)이 여행 비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 취업을 하

다가 여권만기로 잠시 귀국하여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거주하다 여권이 발급되어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는? (이들 부부가 해외에 나간 후에는 자녀 1명만이 현거주지에 거주할 것임)

○ 1~2개월후 해외에 나갈 것이 확실하다면 조사하지 않음

(사례 3)

- 무직인 할머니가 손녀(국교 2학년) 1명과 생활하는 가구로 손녀는 주말이나 방학이면 자기 본가로 가고 할머니도 소일거리를 찾아 외출을 많이 하는 경우의 적격여부?

○ 손녀와 같이 생활하는 기간은 적격가구로 조사해야 하고 가계부 기입을 충실히 하도록 설득

---

#### 4)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의 병용주택 가구

---

(사례 1)

- 가게와 방이 같이 있는 곳에서 뽀빠이 치킨체인점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것은 없고 체인점이라 음식을 가져와 (배달받아) 가공하여 판매함. 가게와 가구의 식료품비가 별개일 때 적격여부?

○ 적격가구로 조사하고 가게에 있는 치킨을 소비하는 경우 현물 처리

(사례 2)

- 부부와 15세미만 자녀 2명이 거주하다가 조사구밖에 슈퍼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슈퍼에서 상주하여 식사를 하고 있고 15세미만 가구원 2명만이 현재 조사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격 여부? (현재 15세미만인 가구원 2명은 적격가구로 조사되고 있으나 기재능력이 부족하므로 부적격으로 처리하도록 개선 요망)

○ 조사구 밖에서 부부가 상주하면서 식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 15세미만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부적격으로 처리

(사례 3)

- 학생 단독가구가 전입하여 자취생활을 하다가 안채에 사는 가구에 월 120,000원의 식대를 지불하고 방은 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경우의 적격 여부?

○ 실제로 하숙업과 동일하므로 부적격 처리

(사례 4)

- 처가 식당을 경영하는 관계로 아침은 가구에서 전가구원이 식사하지만 점심, 저녁은 전가구원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식료품비가 거의 기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가구도 조사대상인지?

○ 부적격가구로 처리

(사례 5)

- 맞벌이부부가구로서 처가 친척집 음식점 일을 도와주면서 부부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을 집에 가져오는 경우에 항목분류부호는?

○ 적격가구로 조사하고 식사를 제공받거나 음식을 가져올 경우 현물소득(근로)으로 평가하여 해당항목에 분류함

(사례 6)

- 가구원이 2명인데 가구주는 소방서 구내식당에 취업한 관계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장녀는 직장에서 식사하며 저녁은 외식을 하는 관계로 가구의 식료품비 등 지출내역이 불균형함

○ 식당에 취업한 가구주가 식사제공 받은 것은 현물소득(근로소득)으로 평가하여 외식비로 처리, 장녀의 식사비도 외식비로 처리하여 조사하도록 함(적격가구)

(사례 7)

- 조사가구에 친척 조카가 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시골집에서 교통비, 교제비, 교육비 등은 보조를 받고 있으며 식사는 조사가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조사하되 동거인인 조카가 지출하는 품목은 조사하지 않음

(사례 8)

- 시누이의 손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연초에 방세명목으로 2백만원만을 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 방세명목이라 하지만 연간 200만원 정도라면 하숙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하숙업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

---

5)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인 가구

---

(사례 1)

- 가구주가 지업사·소매업을 하는데 영업상 사용인은 아니지만 도배공사 일을 같이 하는 타가구원이 공사가 있을때는 무료로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함
- 영업상 사용인이 1인인 경우는 적격가구로서 조사를 하여 이 경우는 영업상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조사를 해야 하며 식사제공시 식사비는 사업상 지출로 보아 가계부에 기록하지 않아야 함

(사례 2)

- 제과점에서 고용인 2인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별도로 방을 얻어 그곳에서 잠만 자고 식사와 세탁은 조사가구내서 제공하는 경우
- 영업상 사용인 2인 이상 가구는 부적격가구로서 제외함

---

6) 비혈연 자취가구

---

(사례 1)

- 사촌이나 육촌형제들끼리 취업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자취하는 가구의 적격여부? (일정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공동 지출하고 그외의 지출은 각자 지출함)

○ 실질적인 하나의 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부적격가구로 처리

---

7) 외국인 가구

---

---

8)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서 일정한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

---

(사례 1)

- 노인부부(2인)가 살고 있는데 부인은 1달에 15일 정도를 서울에 있는 딸의 애기를 봐주기 위하여 출타하고, 또 부인이 집에 오면 남편이 애기를 봐주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고 주생활 근거지는 본조사구임. 적격여부는?

○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서 부적격으로 처리

(사례 2)

-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가구로 동생부부 및 친척들이 자주 와서 식

사를 하고 있으며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보고 점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함

- 친척들의 지출내역은 파악이 안된다 하더라도 조사가구의 지출 품목은 파악하여 조사해야 함

(사례 3)

- 노인부부만이 생활하는 가구로 이들은 자주 자녀집을 방문 (한달 10회 정도)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친척들이 방문하여 며칠씩 기거하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써 부적격처리

(사례 4)

-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인근의 조사지역내로 전입은 가구인데 가구원은 환자와 병간호를 위한 어머니, 2명이나 본가에서 수시로 가족들이 왕래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음식을 가져올 때가 많아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함(어머니도 출타가 빈번함)

- 부정기적 출타가구로서 부적격처리

---

## 9) 가계수지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가구

---

(사례 1)

- 한가구의 구성원이 노부부(2), 아들가족(6), 출가한 딸가족(5)인

경우의 조사여부?

- 가구주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가구원들의 소득과 지출내역을 전부 파악하여 조사해야 한다.

(사례 2)

-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가구에서 가구원중 4명이 그 사업에 종사하며 그 중 2명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4명 모두가 점심을 공원들과 함께 하는 경우?
- 적격가구로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공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의 경비는 사업상의 지출이므로 제외하고 가구원 2명의 점심식사비만 평가하여 현물처리함

(사례 3)

- 71세의 노모를 모시고 10세미만의 두자녀와 함께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이혼남자(가구주)로 매일 귀가시간이 늦고 노모는 문맹으로 가계부 기입능력이 없는 경우의 조사여부?
- 가구주를 설득하여 조사해야 함이 원칙

(사례 4)

- 할머니(72세)와 7세미만의 손자 2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이들은 모두 가계부 기재능력이 없는 경우의 적격여부?

- 적격가구로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가계부 미제출 사유를 "기재능력부족"으로 함

## 2. 가구실태에 관한 사항

### 가. 가구구분

- 
- 도시가계조사에서의 가구구분은 종사상의 지위, 직업형태, 취업 유무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근로자가구
    - 봉급자가구
      - 공무원
      - 공무원외 종사자
    - 노무자가구
      -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 임시 및 일용노무자
  
  - 근로자외가구
    - 상개인자
    - 법인자
    - 자유무기
    - 경영자
    - 경영자
    - 인자
    - 자
    - 직
    - 타
- 

#### (사례 1)

- 가구주가 일이 없어서 한두 달 무직자가 되고 동시에 가구원이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된 경우의 가구구분은?
- 조사기간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을 가구주로 선정하되 가구원의 소득이 생활비에 쓰여짐을 전제로 함

(사례 2)

- 가구주가 한 달 동안 실직상태로 있다가 다음 달에 다시 막노동을 하는데 가구구분을 매월 변동처리해야 하는가?

○ 직업형태, 취업상태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가구구분도 변동처리하며 실직상태라면 무직가구로 구분

(사례 3)

- 가구주 직업이 건설회사 이사인데 회사의 경영난으로 가구주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의 대부분을 임대료 (월 135만원)로 충당하고 있을 경우의 가구구분은?

○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수입이 거의 없아도 법인경영자 가구로 분류

(사례 4)

- 가구주가 간호조무사인 경우의 가구구분은?

○ 국(공)립병원에서 기능직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공무원가구로 분류하고 사설병원에 고용된 경우엔 사무직종사자로 분류

(사례 5)

- 우유외판원의 가구구분은?

○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 가구구분 등

일부 조사항목에 있어서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음. 우유외판원의 경우 기본급이 없고 수당만 지급받고 있다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상인으로, 경찰에서는 임금근로자로 구분

(사례 6)

- 화물트럭을 갖고 있는 가구주가 회사에 들어가 지입제로 화물운송 일을 하는데 운송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을 때의 가구구분은?

○ 가구구분은 우선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고용자의 위치에서 일정한 봉급이나 노임을 받을 경우에 근로자가구로 구분하지만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자신의 장비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댓가로 실적급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아 상인으로 분류

(사례 7)

- 자기집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회사에 납품하는 가구로서 미싱과 실을 본인이 구입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옷감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매월 봉급을 받는 경우의 가구구분?

○ 보수형태가 일정한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구로 구분하고 단지 수당만 지급받는다면 상인으로 구분

(사례 8)

- 부모와 딸이 사는 가구로 아버지는 무직이고 딸이 취업하여 월 4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수입금은 전혀 생활비에 충당되지 않고 부의 재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때 취업자인 딸을 가구주로 선정하여 근로자가구로 볼 수 있는가?

○ 가구원이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그 소득이 생활비에 전혀 충당되지 않고 가구원이 별도 관리한다면 비록 무직이지만 실질적인 생계책임자인 부를 가구주로 하여 무직가구로 분류

(사례 9)

- 정년 퇴직한 가구주의 연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처가 약국에 나가 청소하면서 월 15만원씩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취업자인 처를 가구주로 하여 근로자가구로 볼 수 있는가?

○ 처를 가구주로 하여 근로자가구로 분류

나. 가구원수

---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기간중 반이상을 한가구에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수를 말함

<포 함>

○ 친척의 자식(송금 유무와 관계없음)

○ 가사사용인 또는 2인미만 영업상 사용인

<제 외>

- 장기간 입원 요양자
- 유학중인 자
- 비혈연 동거인

※ 하숙인이 있는 가구는 부적격

---

(사례 1)

- 대상가구에서 매월 15일 이후 출생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가구원수 포함 여부가 애매한 경우인데 인구동태조사에서는 경찰 실사가 끝날때까지 가구원을 확인 조사하게 되나 도시가계에서는 조사기간중 반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포함되느냐 안되는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불일치함?
-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거주기간이 15일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족인 출생자 또는 사망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 그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지출비용도 조사를 함

(사례 2)

- 가구주(여자)가 이혼한 상태에서 모친과 함께 국적이 미국인 5살된 아들과 살고 있는데 가구표와 가계부상의 가구원수에서 이 아들을 제외시켰으나 가계부 내용에는 아들의 지출품목이 많이 나오고 있음

- 아들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이 한국인 이고 또 이 경우는 가구주와 아들이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으므로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조사해야 함 (가계부의 가구원수란에는 3명으로 하여 포함시킴)